



“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”

우)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, 8F[www.kma.org]/ 전화(02)6350-****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김기성 [6574] 보험급여팀장 백영기 [6581] 대리 고영옥 [6573]/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1402호

시행일자 2018. 1. 23.

수 신 각 시·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고시(2018-10호) 일부개정 알림

1. 관련근거

- 보건복지부, 보험약제과-468호(2018. 1. 22)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0호(2018. 1. 22)
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43호, 2017.12.26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동 사항을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 내 [정보]-[법령]-[훈령/예규/고시/지침]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www.kma.org) 내 [상담실]-[무료보험상담실]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주요내용]

- "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[별표1]" 중 신설 (별지 1)
* (주요내용) 라트루보주 (성인연조직육종 환자 치료제) 등
- "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[별표1]" 중 변경 (별지 2~3)
- "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[별표1]" 중 변경 (별지 4) / 실 거래가 인하에 따른 변경

- "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[별표1]" 중 삭제 (별지 5)
 「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33호의 별지 8」로 삭제된 약제 중 일부변경 품목 (별지 6) / 실거래가 인하에 따른 변경
 「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46호의 별지 5」, 「제2017-168호의 별지 6」, 「제2017-188호의 별지 7」 및 「제2017-209호의 별지 5」로
 삭제된 약제 중 일부변경 품목 (별지 7) / 실거래가 인하에 따른 변경
 '별지5'로 삭제된 약제중 일부약제의 상한금액 변경 (별지 8) / 실거래
 가 인하에 따른 변경

[시행일]

- 별지 1, 별지 2, 별지 4, 별지 5, 별지 7 및 별지 8 : 2018년 2월 1일
 * 별지1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별로 붙임
 1에 기재된 날
- 별지 3 : 2019년 1월 1일
- 별지 6 : 2018년 1월 30일

붙임: 개정고시 전문 및 개정안 각 1부. 끝.

